

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0년 6월 1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0년 6월 3일
- 나. 제안자: 이의걸 의원 외 13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6. 1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의걸 의원)

제안이유

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인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, 지원법인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함

(안 제3조~제4조)

- 다.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마. 보조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바.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- 나. 협조부서: 행정지원과
- 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제정 취지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상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·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- 범죄피해자에 대해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법인도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「법」이라 함)에 따라 등록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였고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 범위에 포함함(안 제2조)

-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·지원 책무를 마련토록 한 「법」 제5조 및 제6조 취지에 부합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「법」 제11조 및 제1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(안 제5조 및 제6조)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 - 「법」 제34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 의견
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5조(지방자치단체책무)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 구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,
- 범죄피해자에 지원에 대한 구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

□ 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2. 30.>

제6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돋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,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, 입소·퇴소의 기준 및 절차, 위탁운영의 절차,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 피해자에 관한 상담·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(이하 "등록법인"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6. 12. 2.>

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. 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2. 30.>

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